

#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

제출년월일 : 2024. 10. 14.

발의자 : 황은화 위원

## 1. 제안이유

-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임용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용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임용점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제3항)
- 점검 제외 대상 및 점검결과 부적절시 조치사항(안 제18조제5항 · 제6항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현행규칙 : 붙임 3

6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4

7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※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’ 생략

## 【붙임1】 개정규칙안

###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내부위원: 인사,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

2. 외부위원: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

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

2.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

3.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

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,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1.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

2.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·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·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붙임2】 산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) ①            · ②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8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) ①           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1. 내부위원: 인사,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</u></p> <p><u>2. 외부위원: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</u></p>
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<u>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</u></p>
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<u>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</u></p> <p><u>2.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</u></p> <p><u>3.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,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</u></p> <p><u>2.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·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·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</u></p>